

<붙임>

2017년 GLOBAL K-FOOD FAIR 참가 수출업체 모집안내

해외 주요시장의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농식품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와의 B2B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농식품 수출거래 알선 및 수출확대 견인

1. 참가업체 모집개요

☐ 모집대상 페어 및 모집규모

구 분	주 력 시 장		유 망 시 장	개 척 시 장
행사국가	일 본 (동 경)	미 국 (뉴 욕)	중 국(상 해)	UAE(두바이)
행사월일	7.26~7.27	9.4~9.5	9.21~9.22	10.25~10.26
수출업체 모집규모	50업체	50업체	50업체	30업체
바 이 어 참가규모	100업체	100업체	100업체	60업체
행사별 주요내용	○ B2B 수출상담회, 이슈세미나, 수출상품설명회 등 2일간 행사 - 수출상담회 :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바이어간 1:1매칭 수출상담회 - 이슈세미나 :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검역, 통관 등 관련이슈 세미나 개최 - 상품설명회(PPT) : 신상품 대상 바이어, 유통업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로 이해도 제고			

* 행사시기, 개최기간, 바이어 수 등 현지 여건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참가대상 : 개최국가별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생산 · 수출업체

☐ 대상품목 : 농림축산식품

- 페어 국가별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 농림축산물이 첨가된 수산물 가공식품은 포함 (* 수산식품은 제외)
- 신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 * 단, 검역요건 등 현재 수출이 불가한 품목은 제외

2. 참가업체 지원사항

- ☐ 현지 초청바이어와 1:1상담 매칭서비스 제공(업체별 상담 공간 별도제공)
- ☐ 수출관련 이슈세미나 및 참가업체 신상품 상품설명회(10업체 **내외**) 지원
- ☐ 참가업체 및 품목정보 수록 디렉토리 제작 · 배포 등 홍보 실시
- ☐ 장소 및 부스 임차비, 운송 통관비 등 지원

구 분	장소임차비	기본 부스· 비품 임차비	운송통관비	비 고
대 기 업	50% 지원	100% 지원	중국·일본(100만원) 아세안 (150만원) 미국·중동(200만원)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중소기업	100% 지원			

3. 참가업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T 홈페이지(www.at.or.kr) 접속 → aT사업 → 고객지원사업 →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GLOBAL K-FOOD FAIR 참가신청 배너 클릭

- aT 홈페이지(www.at.or.kr) 및 Kati(www.kati.net) 배너 모집광고 클릭

□ 제출기한 : 2017. 6. 7(수), 18시까지

- 신청업체별 페어 참가횟수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시스템(<http://www.at.or.kr>)내 신청서 작성
- 기타 구비서류 지원 신청 시 :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② 제품카탈로그 스캔(or사진)(신청 페어 개최국가 공식언어 또는 영어 등)
 - ③ 제품에 부착된 포장표기(라벨 등) 스캔(or사진)(신청 페어 개최국가 현지어 또는 영어 등)
 - ④ ISO, HACCP, GAP, GMP, 할랄인증서 스캔(or 사진)(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⑤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필수, 신규업체에 한함)

4.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의 농식품 수출전문가로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별 점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응모업체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업체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심사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페어 참가업체 유의사항

☞ 공사에서는 K-FOOD FAIR행사의 원활한 행사운영과 다수 참여희망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시행하오니 사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재 사항 및 적용기간	
▶ 참가업체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			
- 중도 참가 포기업체	○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후 참가포기 시 : △10점 ○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전 참가포기 시 : △ 5점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공사가 별도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시, 면책 가능	사유발생일 익년부터 1년간 적용	
- 참가횟수제한	○최근 2개년 간의 페어 참가횟수에 따라 차등적용 - 7회 이상(△10점), 6회(△8), 5회(△6), 4회(△4), 3회(△2)		
- 참가중 중도철수, 부실 운영	○ 페어 참가 중 중도 철수하거나, 부실운영(비식품전시, 불성실한 부스운영, 업체간 불협화음 등)시 : △10점		
▶ 참가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적용 : UAE 참가 시 해당 국에서 인정 하는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5점 추가 부여			

6. 선정결과 발표

GLOBAL K-FOOD FAIR 참가신청 페이지 접속 → 결과 조회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

○ 일괄 발표 : 2017. 6. 16일(금)

※ 문의처 : 아태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62), 박상현 사원(061-931-0967)

2017.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붙임1>

2017년 글로벌 K-FOOD 페어 참가 지원신청서

신청지역	주 력	일 본(동 경) ()	미 국(뉴 욕) ()
	유 망	중 국(상 해) ()	
	개 척	UAE (두바이) ()	
※ 신청업체당 페어 지역 복수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참가희망 지역에 ○ 표시 / ※ 복수 참가 희망 시에는 건별로 신청서 작성 요망			

업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연락처						
FAX					이메일						
주소	(URL)										
'16년 수출실적 (USD)	농식품 전체 수출 실적				\$	'16년 매출액 (한화)					
	페어 해당국가 수출실적				\$						
참여여부	· 수출상담회 참여(의무) · 신상품설명회(참가여부) : POWER POINT A4 10장이내 10분 분량 / 선정후에 작성 제출										
참가품목	· 출전품목은 가급적 상세하게 품목명 기재 요망				품목 수						
참가 신청배경	· 기 추진 중인 품목은 추진성과 및 실적 기재 · 생산 및 유통 현황, 수출입동향, 소비자기호, 수출경쟁력 비교, 기존 수출제품과 차별성, 채산성, 수출확대 가능성, 현지인 소비확대 가능성 등										
해외시장 개척노력	· 해외바이어 보유현황 또는 확보방법, 신청국가 시장조사 실적 · 신청품목 최근 3개년 aT 해외시장개척사업(박람회·판촉 등) 참가실적 등										
구비서류 보유여부	표기언어					인증서 보유					
	카달로그		제품포장		홈페이지	ISO	HACCP	GAP	GMP	할랄	
	현지어		현지어		현지어						말련
						인니					
						UAE					
	영어		영어		영어		중국 보건 식품 등록	기타 해외인증	해외인증서 내용 기재		
	기타		기타		기타						
없음		없음		없음		* 해당항목에 ○표시					

<붙임2>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협조를 위한 안내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전담기관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수행과정에서 사업실적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출실적을 고객님께 요청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수출증빙서 발급 및 수출실적서류 복사 등에 따른 인력의 낭비 및 비용 발생 등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세무역개발원을 통한 관세청 무역통계자료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출실적 확인에 따른 각종 서류제출을 폐지함으로써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관세무역개발원을 통해 무역통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님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사의 동의하에 제공받은 관세무역개발원의 수출실적 자료는 공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수출실적 확인 용도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드림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 1)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 2) 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 4)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 .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관련번호 모두 기재)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 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GLOBAL K-FOOD FAIR 참가업체 유의사항 인지조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K-FOOD FAIR(이하 “페어”라 한다)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참가 신청하는 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및 지원사항) ①농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수출업체이다. 단,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취급업체는 참가신청이 불가능(농림축산물이 첨가된 수산물 가공식품은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 · 동일주소지 · 동일 전화번호(팩스번호)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으로 참가등록을 할 수 없으며, 추후 등록 또는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대기업은 참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며, 장소임차비는 대행용역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참가업체 지원사항은 “바이어 섭외 및 수출상담장소(기본부스 · 비품 및 공용공간 임차비) 제공, 참가품목 홍보 등 지원”, 아래와 같이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며, 항공 및 숙박, 교통 등은 업체가 자부담하며, 자기 책임하에 행사지에 도착하여 한다. 다만, 운송통관비 지원에 있어 이미 물건이 운송 및 통관 중에 있는 경우 참여업체가 포기 시는 운송통관비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8조 불가항력 조항에 의하여 참가업체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지역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가 초과분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구 분	장소임차비 (B2B)	부스·비품 및 공용공간 임차비	운송통관비 (지원한도)	비 고
대기업	50%	100% 지원	50%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중소기업	100% 지원	100% 지원	중국·일본 (100만원) 아세안 (150만원) 미국·중동 (200만원)	

제3조(등록신청) ①연간 페어에 대한 참가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신청시 감점이 부과되므로 업체별 참가 시기, 여건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되는 서류를 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사이트에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 내 원본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선정) ① 제출된 서류는 **계량평가(수출시장개척의지), 비계량평가(품목적정성, 시장개척현황)과 가감점(참가횟수, 참가포기, 중도철회·부실운영 등)**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부류별 최고점수 평가업체 순으로 참가자를 결정**한다. 단, 선정업체 수가 모집업체 수에 미달할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의해 잔여 선정업체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공사 및 유관기관의 농식품 수출전문가로 구성되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되 위원 명단, 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페어의 참가) ① 페어 참가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사이트 참가업체 모집공고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집 시 공고, 유의사항 등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참가자는 행사 시 공고나 유의사항에 의한 페어 담당 직원의 정당한 안내 및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통제 불응 시 현장 퇴장 및 이후 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선정된 업체의 사업설명회 참가) ① 페어 참가에 앞서 성과제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참가업체 준수사항, 사전 홍보·마케팅 활동 등 페어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 주관부서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에는 참가업체 출장예정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참가업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설명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에 사유를 통보할 경우, 향후 개별적으로 준비사항을 대행사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제7조(감점 및 가점) ①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설명회 개최 전 포기 시는 익년도 참가업체 선정 평가 시 1년간 △5점, 설명회 날짜를 포함하여 설명회 개최 후 포기 시는 △10점 감점 적용 한다. 단, 신선농산물중 정부정책에 따라 선정되는 선도조직은 참가횟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페어 참가 시 비식품 전시, 행사중 무단 철회, 부실한 부스 운영, 부당한 요구 및 문제제기 등 불협화음 야기 등에 대한 aT 운영 직원의 정당한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그 시간 이후로 페어 부스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익년도 참가업체 평가시 △10점 감점을 적용한다. ③ 유효한 할랄인증서 및 6차 산업인증업체는 가점을 5점 한도내에서 부여한다.

